

김천시 공고 제 2023 -2088호

「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2일

김 천



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내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 - “벤처투자조합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.
-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(안 제24조의1제4항)

-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

- 인용 조례 제명 수정

- 제명 띄어쓰기 수정(안 제9조)

- 개정에 따른 제명 수정(안 제24조의4제2항)

- 제명 수정(안 제29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(참조: 투자유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-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 39532)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, 김천시청 투자유치과

- 전자우편: cooki1984@korea.kr

- 팩스: 054-420-6239

4. 그 밖의 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투자유치과(전화 054-420-62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(www.gc.go.kr)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의견서

<의견제출>

입법예고명	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	찬·반여부	찬·반여부에 따른 의견
	제○조 제○항	찬성 이유로 찬성
	제○조 제○항	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(의견제시)

<의견제출자>

- 성 명: ○○○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
- 주 소:
- 연락처: ○○○-○○○○○-○○○○○(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)

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벤처투자조합”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.

제9조 중 “「김천시 시세감면 조례」”를 “「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24조의4제2항 중 “「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3항 중 “「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」”를 “「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